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2. 2 선고 2019가단14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선경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론 종결 2020. 12. 15.

판결 선고 2021. 2. 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6. 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35,03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는 2017. 3.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680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4. 'B은 C 유한회사에 84,651,475원 및 그중 23,805,965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3. 7.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인 D은 2018. 6.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3/7 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E, B이 각 2/7 지분에 관하여 D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E,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5.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9. 6. 23.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8. 11. 22. 근저당권자 F에 채권최고액48,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2. 27. C 유한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므로 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7,135,039원의가액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유일한 부동산인사실이 인정되고, B에게 달리 특별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자인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 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에서 대위변제된 금원을 또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2003다60891 판결).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부동산 가액 -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B의 상속지분인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피고는 2018.11. 22. 근저당권자 F에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멸실된 사실, 별지 목록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는 조적조 칼라강판기와지붕 단층 점포 37.1㎡가 존재하고 위 점포의 존재를 감안한 2019. 8. 2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31,67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2018. 6. 4.경 피담보채무는 35,825,20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현재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131,670,000원에서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위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35,825,201원을 공제한 나머지 95,844,799원(= 131,670,000원 - 35,825,201원)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27,384,228원(= 95,844,799원 × 2/7, 원 미만 버림)이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그리고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위 양수금 채권액인 '84,651,475원 및

그중23,805,965원에 대한 2017. 1.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하게 된 이익은 위 27,384,228원이므로, 결국 위 각 금액 중 최소 금액인 27,384,228원이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135,0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B의 다른 채권자인 G 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G는 위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원고는 G가 지급받을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1273호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 및 이 사건지분 반환에 갈음한 44,816,077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21. 무변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G는 2019. 7. 15. 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H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12. 1. F, C 유한회사, G를 각 배당받을 채권자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9. 9. 23.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피고는 이 법원 2020가단15518호로 C 유한회사, G를 각 상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은 취소채권자인 G에 아직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기

[별지]

목 록

1. 경상북도 경주시 대 38㎡

2. 경상북도 경주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지상

목조와즙2계건영업소

1층3평4흡

2층3평4흡

목조와즙2계건영업소

1층4평

2층4평

끝.